

새정부 일자리정책과 주요 추진 방향

2017. 7.

주무현

(한국고용정보원, 선임연구위원)

www.keis.or.kr

jumuhyun@chol.com

TABLE OF
CONTENTS

1.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
2.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 구축
3.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(공공부문)
4.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(민간부문)
5. 취약계층 일자리사업
6. 지역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
7. 일자리 질 높이기
8. 평가와 전망

1. 일자리정책의 기본 방향

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**정책의 최우선순위**에 두고, 경제·사회 시스템을 **고용친화적으로 전환**하여 **“성장-일자리-분배”의 선순환** 구축

- 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제·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
- ② **新성장동력 창출**과 **경제체질 개선**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제고
 - ▶ 대기업과 기존 주력산업에 의존한 성장전략의 한계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, 성장의 기반을 다원화
- ③ 일자리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**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**
보건, 복지 등 사회서비스분야 중심의 **공공부문 일자리 확충**하고, **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**

2.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 구축

■ 대통령 직속 **일자리위원회를 설치 및 일자리수석실 신설**

- ▶ **일자리위원회**는 전문위원회, 특별위원회 및 지역일자리위원회를 구성
 - 지역일자리위원회는 30여명으로 구성하고, 대통령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호선
 - 지역고용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제도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며, 기존 지역고용거버نس 활용 방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필요

■ **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**하여 고용상황을 **상시 모니터링**,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

- ▶ 취업률, 실업률 및 취업유발계수 등 정량적 지표, 비정규직 및 임금격차 등 정성적 지표 등이 포함
- ▶ 일자리 중심의 국정 철학 표현으로 상징적 효과 높으며, 지자체에서도 일자리상황판을 설치 운영

2.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 구축

■ 교육·노동·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**재정·세제·금융**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**좋은 일자리 창출** 중심으로 **재설계**

▶ 주요 정책·예산사업 **고용영향평가 강화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추진**

- ① 직접일자리사업 통합,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거버넌스 구축,
③ 장려금제도 단순화, 취약계층 고용촉진·격차해소 집중, ④ 고용서비스·직업훈련 품질관리체계 구축

▶ **일 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·고용 세제지원제도 통합·재설계**

▶ **근로감독관 증원(추경예산안, +500명)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기본법령 준수 등 일자리 기초질서를 강화**

3.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(공공부문)

- '17년 하반기 **공무원 1.2만명 추가채용**을 위해 선발·교육 등 관련비용을 **추경 예산안에 반영**하고 **연내 선발**을 완료
 - ▶ **사회서비스 일자리**(아동안전지킴이와 노인일자리) 등 **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**를 중심으로 **대폭 확충**(추경 반영)
- 향후 5년간 추진할 **「공공부문 일자리 총원 로드맵」**을 수립하여 일자리위원회에 **상정·확정**
 - ▶ 공무원은 로드맵에 맞춰 **총정원령** 및 **수당규정** 등 개정
 - ▶ 공공기관의 경우, **'17년은 시급히 인력 확충**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**수시증원 협의**를 활용
 - '18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**기능점검·분석**과 연계하여 **'중기 인력운영계획('18~'22)**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일자리 확충
 - 공공기관의 **「'17년 경영평가편람」**에 **일자리 관련 지표**를 강화(7월)하고 **변경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실시**

4.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(민간부문)

- 경제·사회의 틀과 체질을 **일자리 중심 구조**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의 **일자리 창출을 뒷받침**
 - ▶ **고용영향평가제**를 강화하여 각종 정책과 예산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고, **근로시간을 단축**하여 생산성 제고 및 **일자리 창출**
 - ▶ **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**을 확대하여 '최소규제-자율규제' 원칙을 적용
 - * 관계부처 네거티브 규제개선 TF를 구성(6월)→규제대상 발굴 및 규제 개선(7월~)
 - (현행)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, 화장품 원료규제 등 일부 도입
- 고용창출의 원천인 **중소·중견기업**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**혁신 창업 생태계**를 구축하여 **창업을 활성화**
 - ▶ **중소벤처기업부 신설**
 -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·창업 지원 기능을 **전담 수행**

5. 취약계층 일자리사업

■ **청년·여성·중장년**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**맞춤형 고용지원**을 확대

▶ **청년구직수당을 신설**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에게 지급

- **청년내일채움공제**의 정부의 매칭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(추경예산안 반영)

* (지원대상) 5만명 → 6만명,

** (총적립금) 2년, 1200만원 → 2년, 1600만원

▶ **육아휴직 급여 인상,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**(現 유급휴가 3일) **확대 등**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

- (현행) 통상임금의 40% → (개선)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%

-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**인건비 세액공제 적용대상** 확대(중소 → 중소·중견기업)

- **중소기업의 공제율 상향*** 조정(조특법 개정안 반영)

* (현행)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 10% 공제

▶ **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**을 확대(+3만개)하고 **참여수당**도 인상

- **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** 마련

6. 지역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

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**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지원**

▶ **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**(광주형 모델) 확산 방안을 마련

*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

▶ 고용생태계 개선을 위해 **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*** 및 **산업·지역단위 일자리 실천전략**** 마련, 일자리위원회 상정(8월)

* 시도별 지역 클러스터 조성계획 마련, 혁신 산단 지정,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한 인상 등

**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과제 마련(11월) → 사업추진 지원('18년)

▶ **수도권 소재 기업 본사를 지방이전** 시 이전인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세제지원 제도 개선(조특법 개정안 반영, 8월)

* (현행)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를 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 감면

6. 지역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

■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등 참여·협동·연대에 기반한 **사회적 경제 육성**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

▶ 「**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**」을 마련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상정·확정(8월)

-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
-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
- 사회적경제 전문인재 양성 등

▶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**사회적경제법안***에 대한 **정부대안을 제출**하는 방안 검토(8월)

* ① 사회적경제기본법, ②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,
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

■ 「**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**」 마련(8월)

- ▶ 혼란·혼선 방지를 위해 **큰 틀에서 가이드라인** 제시
 -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각 공공기관이 **노사 협의**를 바탕으로 **자율적**으로 추진

■ **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**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

- ▶ **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** 마련(8월)
 -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'동일가치노동·동일임금' 원칙을 적용
 -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·안전 등 '사용사유 제한제도'를 도입
 - * 상시·지속, 생명·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,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등
 - 기업의 비정규직 **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**을 확대,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**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** 도입 검토
 - 다만, 사용사유 제한,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**실태조사 등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**으로 추진

7. 일자리 질 높이기

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→52시간으로 단축

- ▶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*의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하되, 여의치 않은 경우 고용부 행정해석 폐기 추진
- ▶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**종합 지원방안 마련**
 - * (예시)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투자 지원 확대,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등

■ 일자리 거버넌스 도입과 고용정책 분권화 시대 실험

▶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자리사업 총괄·조정 기제

- 유사 중복에 따른 국민체감도 낮고, 고용성과 또한 낮아 '일자리사업 무용론' 팽배
- 예산 담당 부처와 일자리 전문가의 협력적 조정 기반 구축
- 중앙정부-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청년문제 해소에 기대

▶ 노동시장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의 조정 및 균형 기제 확보?

- 노동시장정책 또는 일자리사업은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원칙과 기준과 구별
- 마치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오해시키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

▶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총괄 조정 기능 부재

- 산업계와 노동계의 비협조적 태도,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문제 존재
- 일자리위원회 - 지역일자리위원회 - 사무국(인자위, 창조센터 등) 운영 주체
- 지자체 일자리사업 추진 주체 기능 강화
- 지자체 예산 지원 확대 등

■ 전통적 노동시장정책과 소득주도 경제정책 동시 추진

▶ 기존 고용정책과 일자리사업은 혁신적 방향으로 개선하고,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의 재정지출은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필요

- 15년 현재, OECD 평균 1.05%, 한국 0.67%
- 실업자, 장기실업자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(employ-ability) 제고
-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활성화(activation) 지속
- 실업급여제도(실업부조제도 도입 등) 개선

▶ 상시적 지속적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소득계층 확대 → 국민 대다수 소득 증대 → 유효수요확대 → 기업 투자 및 노동수요 증대 → 생산 증대(내수확대) → 국민경제 안정 (포스트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모델 실험)

- 소득 또는 임금주도 성장체제, 포용적 성장정책과 구별
- 과거 토목 또는 공공근로사업의 전통적 뉴딜정책에서 국민안전 및 건강 분야 등 사회서비스 제고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확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

■ 일자리사업 재정비 및 혁신 필요

▶ 단기 성과주의 중심의 일자리사업 지양

- 취약계층 소득보전과 사회통합 목적의 직접일자리사업 비중이 높음 → 일자리사업 대신 복지급여 확대 → 고유의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로 투입하여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

▶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일자리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전달체계 단순화 및 고용효과 제고

- 기존 일자리사업 효과가 낮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 채, 정책입안자의 의도와 예산 확보 용이성 때문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는 비효율성이 누적
- 185개 일자리사업과 17.1조원 효과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정량적 일자리 창출 목표 아래 혁신 방향의 퇴색 가능성 존재

▶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고유한 주변 업무를 일자리사업으로 활용하는 사례 폐지

- 한시적 인건비 사업, 시설 운영 인력 인건비 등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으로 포장하여 수십 년간 유지되는 경우도 비일비재
- 일자리사업 재정비와 일자리 창출 확대의 모순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소

■ 지역고용정책 활성화 정책 본격 추진 필요

▶ 지역사회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청년일자리 부족과 연결

- 청년고용(지역인재)할당제
- 지역고용거버넌스 활성화
- 혁신도시 연계 일자리사업 적극 추진 → 입주공공기관의 지역사회책임성 강화 → 지역인재양성체제 혁신 방안 마련 필요

▶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추진

- 지자체-의회-기업-교육기관 협력 체계 구축 → 일자리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
- 지역사회의 책무성(accountability) 강화 필요

▶ 지역노동시장 분석과 일자리사업 전문가 역량 강화

- 지자체 일자리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(우수 인력 확보)
- 민간부문 전문가 집단 확충 방안 마련 필요 → 중앙정부 의존성 극복은 우수 전문가 확보가 관건 →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역사회의 핵심 의제로 설정 등

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모형 개발과 지속가능성

- ▶ 지역별 일자리창출 또는 노사상생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민주성 확보
 - 지역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특성과 인력구성 등을 반영한 지역고용정책 개발
 -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와 논의를 보장
 - 단기 성과주의 일자리창출이 아닌 장기적 내생적 지역발전전략과 연계 필요
 - 지역사회의 리더십 확보가 핵심 관건(스웨덴 말뫼 사례 등)
- ▶ **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은 혁신(innovation), 인재(skilled labour), 기업가정신(entrepreneurship), 사회적 합의(social cohesion) 등을 기본 구성요소로 해야만 지속 가능**
 - 대규모 기업유치만 바라보는 전통적 성장전략은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붕괴시키고, 지역외 분사(spin off)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고 내생적 발전 구조 구축 미흡
 - 지속가능성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인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의존
 -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모형은 실패와 성공의 반복된 성과로 구축되는 역사적 과정

감사합니다